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43
----------	------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7. 11. 8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7. 11. 10.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7. 11. 8.)
    - 부위원장 선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7. 12.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7. 12. 5.)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7. 12. 15)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 II .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302억원(1.4%)이 감소한 총 2조 1,841억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5,932억원이며 실질행 사업비는 5,909억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도 기금별 운영규모

(단위 : 억원)

연번	기 금 명	예산액	연번	기 금 명	예산액
1	재 정 투 용 자 기 금	7,215	9	사 회 복 지 기 금	500
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500	10	체 육 진 흥 기 금	93
3	식 품 진 흥 기 금	99	11	감 채 기 금	1,831
4	기 후 변 화 기 금	681	12	재 난 관 리 기 금	7,091
5	사 회 투 자 기 금	169	13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18
6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384	14	대 외 협 력 기 금	135
7	성 평 등 기 금	11	15	지 역 개 발 기 금	9
8	자 원 화 수 시 설 주 민 자 원 기 금	666	16	도 시 재 생 기 금	339

###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기금 개요

-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개별 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서울시가 2018년도에 운용할 16개 기금(22계정)의 총운용 규모는 2조 1,840억 9,100만원으로, 2017년도(2조 2,142억 7,600만원) 보다 △1.4%, 301억 8,6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1〉 2018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 감	증 감 률
총	운 용 규 모	2,184,091	2,214,276	△30,185	△1.4
	기 금 사 업 (용자사업포함)	589,596	479,974	-589,596	22.8
	재 무 활 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593,231	1,733,060	△139,829	△8.0
	행 정 운 영 경 비	1,263	1,242	-1,263	1.6

- '17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8년도부터 도시재생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서 서울시는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임
- '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sup>1)</sup>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기후변화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등 기후변화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속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  
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  
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금을 활용하고 효  
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  
월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공사·공단의  
공채상환을 위해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서  
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표 2〉 기금현황 (16개 기금, 22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3	식품진흥기금	1989	영구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4	기후변화기금	2007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5	사회투자기금	2012	'21.12.31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6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7	성평등기금	1996	'22.12.31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8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1996	영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013	영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993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1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99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02	'22.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표 3〉 기금현황 (16개 기금, 22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4	체육진흥기금	2000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5	감채기금	2001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1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03	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	영구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 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8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22.12.31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19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007	'18.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005	'18.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	지역개발기금	2017	영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설치, 운용함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2	도시재생기금	2017	'21.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자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6개 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3조 1,82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3조 5,881억원)보다 △11.3%, △4,06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2018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2018년도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조성액	집행액			
합 계	3,588,138	588,747	994,838	3,182,048	△406,090	△11.3
재 정 투 용 자 기 금	2,331,790	104,074	218,766	2,217,098	△114,691	△4.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0,675	159,322	242,632	7,365	△83,309	△91.8
식 품 진 흥 기 금	67,146	3,245	5,587	64,804	△2,342	△3.4
기 후 변 화 기 금	50,388	31,179	56,025	25,542	△24,845	△49.3
사 회 투 자 기 금	6,901	10,013	14,270	2,644	△4,256	△61.6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4,407	23,943	25,270	13,079	△1,327	△9.2
성 평 등 기 금	24,077	936	950	24,064	△13	△0.1
자 원 회 수 관 련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금	28,141	52,978	60,868	20,355	△7,890	△28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7,962	24,385	32,368	19,979	△7,982	△28.5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83	28,593	28,500	376	93	32.8
사 회 복 지 기 금	40,116	25,087	32,421	32,782	△7,334	△18.2
노 인 복 지 계 정	13,914	195	864	13,245	△669	△4.8
장 애 인 복 지 계 정	24,345	2,093	3,025	23,414	△1,049	△3.8
자 활 계 정	6,267	399	1,182	5,483	△783	△12.4
주 거 지 원 계 정	11,119	22,517	27,350	6,286	△4,832	△43.4
체 육 진 흥 기 금	57,653	7,605	8,103	57,155	△498	△0.8
감 채 기 금	178,810	4,350	182,835	325	△178,485	△99.8
재 난 관 리 기 금	650,768	124,549	98,693	676,625	26,280	3.9
재 난 계 정	376,377	122,252	96,821	402,282	25,430	6.7
구 호 계 정	274,391	27,422	1,871	274,821	425	0.1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8,031	1,227	7,100	12,159	△5,872	△32.5
대 외 협 력 기 금	7,390	5,629	7,401	5,619	△1,771	△23.9
국 내 협 력 계 정	5,382	3,066	4,765	3,683	△1,698	△31.5
국 제 협 력 계 정	2,008	3,063	2,636	2,435	426	21.2
지 역 개 발 기 금	5,725	88	14	5,799	74	1.2
도 시 재 생 기 금	-	33,897	33,897	-	-	-



- 기금의 조성규모를 검토하면, 수입계획은 5,887억원으로 계획한 바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조성액 감소로 2017년도(6,256억원) 보다 △5.9%, △369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수입액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1 8	2 0 1 7	2 0 1 6	2 0 1 5	2 0 1 4
당 해 연 도 수 입 액	588,747	625,689	735,253	1,051,246	1,018,453
증 감 액	△36,942	△110,064	△315,993	32,793	△446,274
증 감 륜	△5.9	△14.9	△30.1	3.2	△30.5

- 지출계획은 2018년도에 9,948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감채기금,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집행액 감소로 2017년도(1조 683억원) 보다 △6.8%, 7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1 8	2 0 1 7	2 0 1 6	2 0 1 5	2 0 1 4
당 해 연 도 지 출 액	994,838	1,068,381	936,309	1,178,752	1,504,302
증 감 액	△73,543	132,072	△242,443	△325,550	△32,978
증 감 륜	△6.8	14.1	△20.6	△21.6	△2.1

### (3) 기금 운용규모

- 2018년도에 운용계획인 16개 기금은 총 2조 1,84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Delta 1.4\%$ ,  $\Delta 301$ 억 8,600만원 감소한 것임
  
- 기금 운용규모 상위 5개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채기금, 기후변화기금으로
  - 재정투융자기금은 금년도(8,058억 2,200만원)보다  $\Delta 9.7\%$ , 843억 2,800만원 감소한 7,214억 9,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5,888억 9,100만원)보다  $24.7\%$ , 1,202억 3,500만원 증가한 7,091억 2,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2,389억 2,500만원)보다  $17.2\%$ , 110억 7,300만원 증가한 2,499억 9,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금년도(3,098억원)보다  $\Delta 40.9\%$ , 1,266억 4,000만원 감소한 1,831억 6,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기후변화기금은 금년도(559억 8,300만원)보다  $21.6\%$ , 120억 8,400만원 증가한 680억 6,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7〉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8	2017	증	감	증	감	률
<b>합</b>			<b>2,184,090</b>	<b>2,214,276</b>	△30,186		<b>△1.4</b>		
재정투융자기금			721,494	805,822	△84,328		△10.5		
중소기업육성기금			249,998	238,925	11,073		4.6		
식품진흥기금			9,892	10,902	△1,010		△9.3		
기후변화기금			68,067	55,983	12,084		21.6		
사회투자기금			16,914	21,389	△4,475		△20.9		
도로굴착복구기금			38,350	38,488	△138		△0.4		
성평등기금			1,114	1,182	△68		△5.8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66,564	55,981	10,583		18.9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7,688	35,888	1,800		5.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8,876	20,093	8,783		43.7		
사회복지기금			50,030	48,290	1,740		3.6		
	노인복지계정		2,109	1,747	362		20.7		
	장애인복지계정		12,039	11,415	624		5.5		
	자활계정		2,246	7,775	△5,529		△71.1		
	주거지원계정		33,636	27,353	6,283		23.0		
체육진흥기금			9,266	10,370	△1,104		△10.6		
감채기금			183,160	309,800	△126,640		△40.9		
재난관리기금			709,126	588,891	120,235		20.4		
	재난계정		499,104	409,525	89,579		21.9		
	구호계정		210,022	179,366	30,656		17.1		
남북교류협력기금			11,775	11,640	135		1.2		
대외협력기금			13,520	10,911	2,609		23.9		
	국내협력계정		8,449	7,347	1,102		15.0		
	국제협력계정		5,071	3,564	1,507		42.3		
지역개발기금			913	5,693	△4,780		△84.0		
도시재생기금			33,897	-	33,897		-		

## 2. 기금별 검토

###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기금 등의 융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 재정투융자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현재액은 2조 2,170억원으로 2017년 연도말 조성현재액(2조 3,317억원)보다 1,14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8〉 재정투융자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2,331,790	104,074	218,766	△114,692	2,217,098
2 0 1 7	2,576,007	116,964	361,181	△244,217	2,331,790
2 0 1 6	2,665,577	170,513	260,082	△89,569	2,576,007
2 0 1 5	2,836,459	394,006	564,888	△170,882	2,665,577
2 0 1 4	3,325,508	364,828	853,877	△489,049	2,836,459
2 0 1 3	3,562,551	790,893	1,027,936	△237,043	3,325,508

- 2018년도에는 동 기금의 수입은 2017년도보다 △843억원 감소한 7,214억원을 운용할 예정임

〈표 9〉 2018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 백만원)

항 목	2018 수입계획	2017 수입계획	증 감
합계	721,494	805,822	△84,328
용 자 금 회 수 ( 이 자 포 함 )	21,974	90,081	△68,107
예탁금원금회수	345,914	472,191	△126,277
예 치 금 회 수	271,506	99,537	171,969
예 수 금	55,445	123,000	△67,554
이 자 수 입	26,655	21,013	5,642

○ 동 기금의 2018년도에 대한 수입금액이 2017년도 보다 감소한 이유는 예수금 즉, 특별회계나 타기금에서 빌려오는 자금을 2017년도 1,230억원보다 675억원<sup>2)</sup> 적은 554억원을 계획하였고, 용자회수금 즉, 특별회계나 타기금으로 용자해주었다가 약정만료로 회수해오는 자금이 2017년도 900억원에서 2018년도 219억원<sup>3)</sup>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지출계획의 주요감소 사유는 예수금원리금회수금액이 금년도 (2,756억원)에 비해 △569억원 감소하였고, 타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용자해주는 예탁금도 금년도(1,200억원)에 비해 △1,050억원 감소되었음

2)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담금 계정에서 554억 4,500만원을 빌려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임

3) 용자금원금회수 197억 5,300만원 + 용자금이자수입 22억 2,100만원

〈표 10〉 2018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항 목	2018 지출계획	2017 지출계획	증 감
합 계	721,494	805,822	△84,328
기 본 경 비	2	2	0
예 탁 금	15,000	120,000	△105,000
예 치 금	487,728	410,133	77,594
예수금원리금회수	218,764	275,687	△56,922

-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재원이 부족한 회계(기금)에 융자·예탁하는 등 회계(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각 회계(기금)의 장기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수익을 얻거나, 예수·융자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활용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나 예탁이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회계(기금) 간의 투명성을 저해시키고, 각 회계나 기금의 실질적인 잔액이나 운용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는 단점이 있어
  - 현재와 같이 기금수, 계정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투융자기금의 내부거래도 증가될 수 있어 적정 기금수를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 중임<sup>4)</sup>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 2,499억 9,800만원으로 2017년도 2,389억 2,500만원보다 110억 7,300만원 증액 운용할 것으로 계획하는 바
  -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억원(100억원 증액),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390억원(△11억원 감액), G밸리기업 펀드출자 1억원을 계획하고,
  - 재무활동 사업은 여유자금 예치금액이 2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검토됨

---

4)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표 11〉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계		249,998	238,925	11,073
중소기업 금융지원		239,134	230,234	8,900
	중소기업금융지원	239,134	230,234	8,900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190,000	10,000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39,000	40,100	-1,10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4	134	0
	투자펀드 출자	100	100	△0
	G밸리기업 펀드 출자	100	100	0
	녹색기업 창업 펀드 출자	0	100	-100
행정운영경비		1,000	1,000	0
	기본경비	1,000	1,000	0
재무활동		9,763	7,591	2,172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 상환	2,398	2,398	0
	예치금	7,365	5,193	2,172

- 제출된 동 기금의 운용총칙에 따르면, '18년 기금운용계획에는 '17년도말 조성액을 906억 7,5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당초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상 '17년도말 조성액은 51억 9,300만원인 바 회계연도중인 지난 10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치금을 854억 8,200만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을 변경한 주요 원인으로는 서울시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융자를 500억원 증액(1,900억원→2,400억원)한 바 있으나, '17년 11월 현재(11.19일 기준) 1,774억원만을 집행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미집행액(625억원)과 융자가 만료되는 민간융자 회수금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18년도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융자금(2,000억원)을 지출계획하고 있으나, 금년도처럼 융자수요가 감소될 수 있어 회계연도중 지출계획의 적기 변경하여 여유재원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기금의 실제 잔액규모는 '13년도 4,134억 2,900만원에서 '18년도 2,690억 3,200만원으로 1,443억 9,700만원이 감소되어,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의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기금재원고갈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12〉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잔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금(A)	민간융자 미회수 채권액(B)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융자 받은 예수금(C)	잔액규모 (D=A+B-C)
2 0 1 8	7,365	479,667	218,000	269,032
2 0 1 7	90,675	491,022	218,000	363,697
2 0 1 6	197,010	479,667	218,000	458,677
2 0 1 5	268,270	466,236	288,000	446,506
2 0 1 4	265,721	533,266	459,000	339,987
2 0 1 3	210,778	808,651	606,000	413,429

주 : 기금총조성규모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을 제외한 실제 잔액규모

○ 또한 동 기금사업중 **G밸리기업 펀드 출자**(1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나 동사업에 대해 ①법령 근거가 없고, ②출자금 편성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5)</sup>

- 현재까지 동 기금사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기금사업을 위한 출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된 바,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금년도말 조성액 671억 4,600만원보다 23억 4,200만원 증가된 648억 400만원이 '18년도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13〉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67,146	3,245	5,587	2,342	64,804
2 0 1 7	67,538	3,662	4,054	△392	67,146
2 0 1 6	67,439	3,919	3,819	99	67,538
2 0 1 5	65,942	5,343	3,846	△1,497	67,439
2 0 1 4	64,939	6,172	5,169	1,003	65,942
2 0 1 3	63,056	6,817	4,934	1,883	64,939

○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10억 1,000만원이 감액된 98억 9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14〉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9,892	10,902	△1,010
식품의약안전		9,887	10,897	△1,010
	식품안전 위생관리	5,532	3,746	1,786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2,000	500	1,500
	교육홍보사업	627	647	△2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68	73	△5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9	574	△15
	식중독예방사업	195	175	2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	175	20
	음식문화 개선사업	1,497	1,604	△107
	음 식 문 화 개 선	382	810	△428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297	210	87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668	584	84
	떡 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50	0	150
	식품안전관리사업	832	799	33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96	101	△5
	음 식 점 위 생 등 급 제 운 영	105	25	80
	식 품 안 전 전 문 교 육	44	44	0
	식 품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293	314	△21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	24	0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149	173	△24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19	104	15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	20	0
	자 치 단 체 징 수 교 부 금	20	20	0
	조사연구 평가사업	381	381	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	31	350
	재무활동비	4,334	7,120	△2,786
	여유자금 예치	4,304	7,090	△2,786
	반환금 기타	30	30	0
기타		5	5	0
	행정운영경비	5	5	0
	기금관리비	5	5	0

- 동 기금의 세부사업 중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 지원”의 경우,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5억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17년도 계획된 용자금(5억원)중 3억 4,900만원만 용자가 되는 등 용자소요가 크지 않고,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용자사업의 증액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어 기금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의 세출재원과 동일하게 당초 지출계획이 실현되도록 사업을 구성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5〉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 지원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	도	당초지출계획	집행액	집행률
2017		500	349	69.8
2016		2,000	215	10.7
2015		3,000	330	11.0
2014		3,000	818	27.3
2013		4,000	2,024	50.6
2012		5,500	2,722	49.5

- 아울러 기금의 특성상 조성된 재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되고 불용액은 다음해 기금재원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지출후 집행잔액에 둔감할 수 있어 기금별 필수 사업 위주로 적정규모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4)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금년도말 조성액 503억 8,800만원보다 △248억 4,600만원 감소된 255억 4,200만원이 '18년도말 조성액으로 전망됨

〈표 16〉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50,388	31,179	56,025	△24,846	25,542
2 0 1 7	45,842	32,090	27,543	4,546	50,388
2 0 1 6	47,739	18,245	20,142	△1,897	45,842
2 0 1 5	51,645	17,608	21,513	△3,905	47,740
2 0 1 4	67,077	14,182	29,614	△15,432	51,645
2 0 1 3	64,448	22,506	19,876	2,629	67,077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7년도보다 120억 8,400만원 증액된 680억 6,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17〉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계		68,067	55,982	12,08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56,020	24,208	31,81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민간부문)	32,189	6,600	25,589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9,789	5,000	24,789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	1,600	800	80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800	0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23,831	17,408	6,223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용자지원	6,100	0	6,100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기후변화기금)	15,000	15,000	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지원(기후변화기금)	800	1,000	△200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6	998	98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15	0	15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	110	10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	500	△200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400	0	400	
행정운영경비		4	4	0
	기금관리비	4	4	0
재무활동		12,042	31,770	△19,727
	여유자금 예치	12,042	31,770	△19,727



(5)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12년 7월 제정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 동 기금의 '18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금년도말 조성액 69억 100만원 보다 △42억 5,600만원 감소된 26억 4,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표 18〉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6,901	10,013	14,270	△4,256	2,644
2	0	1	7	9,925	13,265	16,290	△3,024	6,901
2	0	1	6	22,856	8,823	21,754	△12,930	9,925
2	0	1	5	32,758	5,701	15,603	△9,901	22,856
2	0	1	4	37,974	3,543	8,760	△5,216	32,758
2	0	1	3	20	50,336	12,382	37,954	37,974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년도 213억 8,900만원보다 △44억 7,500만원 감액된 169억 1,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인 바

- 동 기금의 경우, 융자성 사업비를 금년도보다 감액지출할 예정이며,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금도 감액운용 할 계획인바 사회투자기금의 지출계획이 축소되어 사업대상자의 수요나 요구가 미반영되지 않도록 필요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19〉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8	2 0 1 7	증 감
계	16,914	21,389	△4,475
사회적경제사업	8,000	8,000	0
사회적경제사업출자금	1,000	0	1,000
소셜하우징사업	5,000	8,000	△3,000
사회적금융원기관지원	130	160	△30
기금관리비	140	50	90
여유자금예치	2,644	5,179	△2,534

- 다만, '18년도 기금사업중 **사회적경제기업 출자금** 10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할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여지도 있으나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기금법」의 내용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할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의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7)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 기금사업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금의 운용부서가 법에 대한 해석조차 바로 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검토하면 사업별 편차가 있어 지출 계획 수립시 소요액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재구조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0〉 '17년도 사회투자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집 행 률	집 행 잔 액
합 계	22,929	6,509	28.4	16,420
사회적경제 기업용자	7,000	4,200	60.0	2,800
사회적경제기업 출자금	1,000	-	0.0	1,000
소셜하우징사업 용자	8,000	2,200	27.5	5,80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60	13	8.1	147
기 금 관 리 비	140	96	68.3	44
여 유 자 금 예 치	6,629	-	0.0	6,629

7)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 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17년도말 조성액 144억 800만원보다 △13억 2,700만원 감소된 130억 7,900만원이 '18년도말 조성액으로 전망됨

〈표 21〉 도로굴착복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 0 1 8	14,408	23,943	25,270	△1,327	13,079
2 0 1 7	16,470	23,224	25,287	△2,062	14,408
2 0 1 6	17,265	23,234	24,029	△794	16,470
2 0 1 5	15,824	25,709	24,267	1,442	17,265
2 0 1 4	16,463	22,675	23,314	△639	15,824
2 0 1 3	15,298	20,835	19,670	1,165	16,463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384억 8,8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축소된 383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표 22〉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38,350	38,488	△137
도로		38,349	38,487	△137
	도로시설물 관리	25,269	25,286	△16
	도로굴착복구공사	25,080	25,061	19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89	225	△35
재무활동		13,079	13,200	△120
	여유자금예치	13,079	13,200	△120
기타		1	1	0
	행정운영경비	1	1	0
	기금관리비	1	1	0

## (7) 성평등기금

- 성평등기금<sup>8)</sup>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임
- 동 기금은 타 기금의 용자사업과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바 2018년도에는 40개 내외 단체,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이는 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감소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 성평등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8 <sup>주2)</sup>	2017	2016	2015	2014
당 초 예 산 <sup>주 1)</sup>	900,000	1,000,000	861,449	616,429	1,421,580
지 원 액	-	843,400	701,580	610,723	1,136,809
단 체 ( 사 업 ) 수	40개 내외	54	44	44	81
단 체 ( 사 업 ) 별 평 균 지 원 액	20,000천원 내외	15,625	15,945	13,880	14,035

※ 주1) 공모사업 평가비 제외

주2) 2018년도는 편성액(예산)기준이며 2017~2014년도는 편성액과 실제 지원액 등을 표기

8)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8)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sup>9)</sup>」에 의하여 ①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18년도 동 기금은 665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①**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이 376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고, ②**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금년도보다 87억 8,300만원이 증액된 288억 7,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24〉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8년(안)	28,245	24,385	32,368	△7,982	19,979
2 0 1 7 년	36,647	43,765	52,168	△8,402	28,245
2 0 1 6 년	33,774	83,381	80,508	2,873	36,647
2 0 1 5 년	40,582	26,542	33,349	△6,807	33,775
2 0 1 4 년	29,723	34,304	23,445	10,859	40,582
2 0 1 3 년	27,339	42,976	40,592	2,384	29,723

9)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표 25〉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8년 운용계획(안)	2017년 운용계획	증감
합 계		66,564	55,981	10,583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계	37,688	35,888	1,800
	난방비 지원	7,621	7,873	△25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590	636	△46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14,671	15,175	△503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485	9,491	△6
	보전지출(예치금)	5,319	2,710	2,60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계	28,876	20,093	8,78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28,500	20,000	8,500
	예치금	376	93	283



## (9)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년도 대비 17억 7,400만원이 감소한 500억 3,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26〉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7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031	48,291	1,740	3.6
노인복지계정	2,109	1,747	361	20.7
장애인복지계정	12,039	11,415	624	5.5
자활계정	2,246	7,775	△5,528	△71.1
주거지원계정	33,636	27,353	6,283	2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sup>10)</sup>에 따라 실시된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sup>11)</sup>에서 서울시 기금중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10% 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하여 수입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기금의 4개 계정중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의 세부사업은 그 성격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반회계 사업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으로 편성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11)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3752('17.11.21)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 (10)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2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7〉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9,266	10,658	7,459	70.0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	500	500	1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380	380	343	90.3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	80	80	10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	20	20	10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	600	534	89.0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	20	20	100.0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지원	0	100	100	100.0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	0	60	60	100.0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0	60	54	90.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표 28〉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WBC 대회 붐업을 위한 응원단 지원	0	25	25	100.0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지원	0	150	0	0.0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0	200	200	100.0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	0	0	0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	200	186	93.0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200	200	100.0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250	250	249	99.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	177	132	74.6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0	60	60	100.0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60	3,180	2,614	82.2
체육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학술 용역	0	84	84	100.0
고척 스카이 돔구장이용 불편사항 개선	0	249	249	100.0
기 금 관 리 비	10	10	5	5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1,395	1,365	1,113	81.5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400	400	400	100.0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 협력 사업	198	198	0	0.0
서울컵 전국원드서핑대회 개최지원	0	150	129	86.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0	60	50	83.3
노후생활 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	0	100	50	5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0	118	118	100.0
예 치 금	1,163	1,661	0	0.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11) 감채기금

- 동 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2001년도부터 운용되었음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31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인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788억원 등과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1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및 이자 827억원, 기타 회계전출 1,000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9〉 감채기금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183,160	722,700	209,030	28.9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75,465	205,300	205,300	100
차입금이자상환	7,320	4,730	3,705	78.3
기본경비 (신용평가 수수료 등)	50	50	25	50
여유자금예치 (감채기금)	325	173,620	0	0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	100,000	339,000	0	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 감채기금의 지출계획중 1,000억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회계간 전·출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 감채기금의 지출계획중 기타회계전출금(1,000억원)을 편성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금전입금(1,000억원)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한 것임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sup>12)</sup>에도 동 기금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금으로부터 전출된 예산을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겠으나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sup>13)</sup>으로 명시하고 있음

12)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3. 기타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17

- 따라서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재원확보가 고려될 필요성은 있으나  
감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입·전출을 편성한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  
으로 판단됨

##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계정 4,991억원, 구호계정 2,100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세부사업으로는 2018년도 재난계정의 경우 재난예방 615억 1,500만원, 응급복구 350억원, 연구용역 3억원이며, 구호계정의 경우 이재민 재해보상 3억 4,700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억 5,9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11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임

〈표 30〉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증감
총 계		709,126	588,891	120,235
재난계정	소 계	499,104	409,525	89,578
	재 난 예 방	61,515	35,076	26,439
	응 급 복 구	35,000	35,000	0
	연 구 용 역	300	750	△450
	여 유 자 금 예 치	402,282	338,693	63,589
	기 금 관 리 비	6	6	0
구호계정	소 계	210,022	179,366	30,656
	이재민 재해보상	346	346	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59	309	5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165	400	765
	여 유 자 금 예 치	208,151	178,310	29,840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억 7,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1〉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11,775	11,680	4,175	35.7
남북교류협력사업	7,000	5,818	1,138	19.5
여유자금여치·예탁	4,675	5,781	3,000	51.8
기금관리비	100	79	40	50.6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14)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되는 바, 2018년도에는 84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8,449	7,408	1,085	14.6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150	50	0	0.0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	53	52	98.1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50	400	337	84.3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358	35.8
지역상생 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50	498	314	63.1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320	0	0	0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22	21	95.5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	150	0	0	0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2,420	0	0	0
여 유 자 금 예 치	3,683	5,382	0	0
기 금 관 리 비	3	3	2	66.7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에는 50억 7,100만원을 편성함

〈표 3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총 계	5,071	3,564	1,281	35.9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46	690	548	79.4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65	498	244	48.9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	69	59	85.5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	20	0	0.0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70	40	23	57.5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670	779	243	31.1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	90	65	72.2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0	50	40	80.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	500	57	11.4
여유자금 예치	2,435	822	0	0.0
기금관리비	5	5	0	0.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15) 지역개발기금

- 동 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성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나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음<sup>14)</sup>
- 지역개발기금은 9억 1,3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17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17년도말 조성액은 57억 2,500만원이며 '18년도말 조성액은 57억 9,9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4〉 2018년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	2017	증감
여유자금예치	899	-	899
재정투융자기금예탁	4,900	-	4,900
사무관리비	4	-	4

- 동 기금의 '18년도 수입계획은 9억 1,3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8억 9,8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자 7,3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지출계획의 경우, 8억 9,9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가 정의하는 “기금”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하였으나 동조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기금으로 정의하고,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그동안 특별회계로 편성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임

## (16) 도시재생기금

- 동 기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7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을 '18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임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38억 9,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5〉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총	계	33,897
	도 시 재 생 기 반 조 성	24,731
	주 민 역 량 강 화	9,156
	기 금 관 리 비	10

# 2018년말 기금 순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8년말 추정 자산규모						
	자 산					부채	순자산
	계(A)	현금과 예금	예탁금	융자금	기타 자산	예수금(B)	계(A-B)
합 계	55,159	11,743	20,079	8,202	15,135	15,290	39,869
재정투융자기금	23,510	4,877	17,294	1,339	-	10,038	13,472
중소기업육성기금	5,755	74	-	5,433	248	2,180	3,575
식품진흥기금	674	43	605	26	-	-	674
기후변화기금	833	121	135	577	-	-	833
사회투자기금	566	26	-	540	-	-	566
도로굴착복구기금	131	131	-	-	-	-	131
성평등기금 (구 여성발전기금)	241	2	239	-	-	-	241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04	57	147	-	-	-	204
사회복지기금	771	176	308	287	-	-	771
체육진흥기금	572	12	560	-	-	-	572
감채기금	14,890	3	-	-	14,887	3,072	11,818
재난관리기금	6,771	6,104	667	-	-	-	6,771
남북교류협력기금	122	47	75	-	-	-	122
대외협력기금	61	61	-	-	-	-	61
지역개발기금	58	9	49	-	-	-	58
도시재생기금	0	-	-	-	-	-	0

## IV. 심사결과

###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7. 11. 8(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박진형(교통)
  - 부위원장 : 문영민(행정자치), 송재형(교육)
  - 위 원 : 김문수(문화체육관광), 오승록(보건복지), 유광상(도시안전), 전철수(도시계획), 한명희(환경수자원), 성중기(교통), 김용석(기획경제), 장인홍(교육)

####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7(목) 10:0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8(금) 11:0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0(일) 10:0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1(월) 10:00 ~ 20:3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수) 10: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7. 12. 15(금) 10:00 (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문영민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2244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  
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 II . 수정 주요 골자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  
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44
----------	------------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 II. 수정 주요 골자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1. 기금운용계획 수정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당초 운용 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 계획안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b>계</b>	<b>2,184,091</b>	<b>-131,140</b>	<b>50,064</b>	<b>181,204</b>	<b>2,052,951</b>	
재 정 투 용 자 기 금	721,495	-130,000	-	130,000	591,495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130,000백만원 감소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49,998	-	-	-	249,998	
식 품 진 흥 기 금	9,892	-	-	-	9,892	
기 후 번 화 기 금	68,068	-	-	-	68,068	
사 회 투 자 기 금	16,915	-	-	-	16,915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38,351	-	-	-	38,351	
여 성 발 전 기 금	1,114	-	-	-	1,114	
자 원 회 수 관 련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주 민 지 원 계 정	37,689	-	-	-	37,689	
자 원 회 수 관 련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수 도 권 매 립 지 계 정	28,876	-	-	-	28,876	
사 회 복 지 기 금 노 인 복 지 계 정	2,109	0	34	34	2,109	상임위, 지출: 사업비(3천백) 증 예치금(3천백) 감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12,040	-	-	-	12,040	
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정	2,246	-	-	-	2,246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33,637	-	-	-	33,637	
체 육 진 흥 기 금	9,267	0	30	30	9,267	예결위, 지출: 사업비(3천) 증 예치금(3천) 감
감 채 기 금	183,161	-	-	-	183,161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499,104	0	50,000	50,000	499,104	상임위, 지출: 사업비(500억) 증 예치금(500억) 감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210,023	-	-	-	210,023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1,775	-900	-	900	10,875	상임위, 수입: 전입금(9억) 감
대 외 협 력 기 금 국 내 협 력 계 정	8,449	-240	-	240	8,209	상임위, 수입: 전입금(2억4천) 감
대 외 협 력 기 금 국 제 협 력 계 정	5,072	-	-	-	5,072	
지 역 개 발 기 금	913	-	-	-	913	
도 시 재 생 기 금	33,897	-	-	-	33,897	

## 2. 수정(안) 내역

### □ 재정투용자기금

####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합 계		721,495,000	591,495,000	△130,000,000	
세외수입		11,246,000	11,246,000	-	-
	경상적 세외수입	11,246,000	11,246,000	-	-
	이자수입	11,246,000	11,246,0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9,025,000	9,025,000	-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221,000	2,22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249,000	580,249,000	△130,000,000	-
	보전수입등	291,259,000	291,259,000	-	-
	융자금원리금회수수입	19,753,000	19,753,000	-	-
	예치금회수	271,506,000	271,506,000	-	-
내부거래		418,990,000	288,990,000	△130,000,000	-
	예탁금및예수금	418,990,000	288,990,000	△130,000,000	-
	예수금	55,446,000	55,446,000	-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45,914,000	215,914,000	△130,000,000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조정 180,000,000 → 50,000,000천원 (△130,000,000)
	예탁금이자수입	17,630,000	17,630,000	-	-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세부 사업				
합 계		721,495,000	591,495,000	△130,000,000	-
재무활동		721,493,000	591,493,000	-	-
내부거래지출		233,765,000	233,765,000	-	-
기금. 특별회계 융자지원		233,765,000	233,765,000	-	-
예탁금		15,000,000	15,000,000	-	-
예수금 원리금 상환		218,765,000	218,765,000	-	-
보전지출		487,728,000	357,728,000	-	-
여유자금 예치		487,728,000	357,728,000	△130,000,000	○ 예치금 자금 조정액 487,728,000 → 357,728,000 (△130,000,000)
예치금		487,728,000	357,728,000	△130,000,000	○ 예치금 자금 조정액 487,728,000 → 357,728,000 (△130,000,000)
기 타		2,000	2,000	-	-
행정운영경비		2,000	2,000	-	-
기금관리비		2,000	2,000	-	-
일반운영비		2,000	2,000	-	-
기금관리비		2,000	2,000	-	-

##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2,109,316	2,109,316	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816,266	850,266	34,000	
	어르신 지도자육성		71,500	105,500	34,000	
		민간이전	71,500	105,500	34,000	○사업비 증액 71,500 → 105,500 (34,000)
일반예산(재무활동)			1,163,155	1,129,155	△34,000	
	여유자금예치		1,163,155	1,129,155	△34,000	
		예치금	1,163,155	1,129,155	△34,000	○사업 증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 1,163,155 → 1,129,155 (△34,000)

## □ 체육진흥기금

###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9,266,671	9,266,671	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993,072	2,023,072	30,00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	30,000	3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30,000	30,000	○'17년 사업 계속 편성 (×) → 30,000 (30,000)
일반예산(재무활동)			1,163,155	1,133,155	△30,000	
	여유자금예치		1,163,155	1,133,155	△30,000	
		예치금	1,163,155	1,133,155	△30,000	○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예치금 조정 1,163,155 → 1,133,155 (△30,000)

##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499,104,255	499,104,255	0	
치수 사업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96,815,850	146,815,850	50,000,000	
	재난예방		61,515,850	111,515,850	50,000,000	○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32,955,850 → 82,955,850 (50,000,000)
		일반운영비	3,640,000	3,640,000	0	
		자치단체등이전	24,920,000	24,920,000	0	
		시설비및부대비	32,955,850	82,955,850	50,000,000	
재무활동			402,282,405	352,282,405	△50,000,000	
	여유자금예치		402,282,405	352,282,405	△50,000,000	
		예치금	402,282,405	352,282,405	△50,000,000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 402,282,405 → 352,282,405 (△50,000,000)

##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항	목				
합 계			11,775,411	10,875,411	△9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88,916	10,788,916	△900,000	
	전입금		1,000,000	100,000	△900,000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	100,000	△900,000	○ 기타회계전입금 감액 조정 1,000,000 → 100,000 (△900,000)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11,775,411	10,875,411	△900,000	
재무활동비(남북교류협력기금)			4,675,411	3,775,411	△900,000	
	여유자금예치		4,675,411	3,775,411	△900,000	
		예치금	4,675,411	3,775,411	△900,000	○ 전입금 감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 4,675,411 → 3,775,411 (△900,000)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항	목				
합 계			8,449,108	8,209,108	△24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000	2,760,000	△240,000	
	전입금		3,000,000	2,760,000	△240,000	
		기타회계전입금	3,000,000	2,760,000	△240,000	○ 기타회계전입금 감액 조정 3,000,000 → 2,760,000 (△240,000)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8,449,108	8,209,108	△240,000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762,227	4,762,227	0	○ 변동없음
재무활동			3,683,881	3,443,881	△240,000	
	여유자금예치		3,683,881	3,443,881	△240,000	
		예치금	3,683,881	3,443,881	△240,000	○ 전입금 감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 3,683,881 → 3,443,881 (△240,000)